

# 협력회사 윤리규범

## 제1장 총 칙

### 1. 목 적

- 본 윤리규범은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투명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, 부패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적용범위

- 본 윤리규범의 적용은 현대중공업터보기계(주)의 협력회사와 그들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### 3. 협력회사 윤리규범의 운영

- 협력회사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, 본 윤리규범을 포함한 현대중공업터보기계(주)의 협력 회사 윤리규범을 준수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## 제2장 윤리적 기준

### 1. 공정한 업무수행

-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은 현대중공업터보기계(주)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-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은 현대중공업터보기계(주)와 상호이익 및 공동발전을 추구하며, 이러한 목적에 위배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.

### 2. 불공정 거래 방지

- 협력회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# 3. 금지사항

-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은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준수한다.
  - 협력회사는 뇌물수수, 알선, 청탁등을 해서는 안되며, 부당한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.
  - 협력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- 협력회사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, 향응을 제공 하지 않는다.
  - 협력회사는 이해관계를 이용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금전적, 비금전적 편의 취득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- 협력회사는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## 제3장 위반시 신고 및 조치

### 1. 위반 행위 신고

- 협력회사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대중공업터보기계(주)의 윤리경영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모든 신고사항 및 신고자의 신상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 단,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경우 정상을 참작한다.

### 2. 위반 행위시 조치

- 현대중공업터보기계(주) 윤리경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 회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, 해당업체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제4장 부 칙

### 1. 시행시기

- 본 윤리규범은 2020년 11월 9일부로 시행한다.